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부터 시행되면서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율을 인상 2007년부터는 현행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불황과 더불어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세액 경감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세율(년간 65천원)을 적용하고,

○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할 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결과 및 참고사항

○ 공고기간 : 2004. 12. 29 - 2005. 1. 18(20일간)

○ 공고장소 : 군.읍면게시판 및 군공보

○ 공고결과 : 다른의견 없음.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세감면조례"을 "성주군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